#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기간연장 조치사항 (주요내용)

| 구 분 | | 조치사항 |
|---|---|---|
| 1. 다중이용시설<br><br>중점관리시설 · 일반관리시설 등 | 공통수칙 | ▸ **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・소독**<br>(상점・마트・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 |
| | 유흥시설 5종 | ▸ **집합금지** |
| | 방문판매 등<br>직접판매홍보관 | ▸ **집합금지** |
| | 노래연습장<br>실내 스탠딩공연장 | ▸ **집합금지** |
| | 식당・카페 | **(카페)** 포장・배달만 허용(무인카페 포함)<br>**(식당)** 21시 이후로 포장・배달만 허용 |
| | 학원(교습소) | ▸ **원칙적 집합금지(교습인원 9인이하, 대학입시 등 허용)** |
| | 결혼식・장례식장 | ▸ 50인 미만 |
| | 홀덤펍 | ▸ **집합금지** |
| | 실내체육시설 | ▸ **원칙적 집합금지(교습인원 9인이하 허용, 축구클럽 제외)** |
| |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(스키장 등) | ▸ **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**<br>▸ **수용인원의 1/3으로 인원제한**<br>▸ **장비대여,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**<br>▸ **타 지역-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** |
| | 야외스크린골프장<br>(밀폐형) | ▸ **집합금지** |
| | 목욕탕 | ▸ 시설면적 16㎡당 1명으로 제한, 찜질시설 운영 금지 |
| | 영화관 | ▸ 21시 이후 운영 중단, 좌석 띄우기, 음식물섭취 금지 |
| | 공연장 | ▸ 좌석 두칸 띄우기 |
| | PC방 | ▸ 21시 이후 운영 중단, 좌석 띄우기, 음식 섭취 금지 |
| | 독서실, 스터디카페,<br>놀이공원, 미용업 상점 | ▸ 21시 이후 운영 중단 |
| | 문화센터 등 평생<br>교육기관 | ▸ 노래·관악기 교습 금지 |
| | 백화점<br>대형마트 | 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, 시식시음·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,<br>▸ 집객행사 금지,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·의자) 이용 금지<br>▸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|
| | 숙박시설 | ▸ **객실 수의 2/3 이내로 예약 제한**<br>▸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<br>▸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 |

| 구 분 | | 조치사항 |
|---|---|---|
| 국공립시설 | 경마・경륜・경정・카지노, 체육시설 | ▸운영 중단 |
| | 이외 시설 | ▸이용인원 30% 제한 유지, 방역 철저 관리<br>인천시<br>- **월미바다열차 운행중단** (2020. 12. 13. ~ 별도 해제 시)<br>- **인천대공원・월미공원 폐쇄** (2020. 11. 24. ~ 별도 해제 시) |
| 2. 일상생활 | 마스크 착용 | ▸실내 전체, 2미터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, 위반 시 과태료 부과 |
| | 모임・행사 | **정부방침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**<br>▸50인 이상 금지, 소모임 자제 권고 |
| | 종교활동 | ▸비대면 20명(모임, 식사 금지) |
| | 교통시설 | ▸인천도시철도 1,2호선 심야시간대 30% 감축운행 |
| | 옥외집합 | ▸10인이상 집합금지 |
| | 직장근무 | **인천시 공공기관 재택근무 등 대상자 1/2 의무시행**<br>▸1/3이상 재택근무(필수인원 제외),<br>▸점심시간 또한 시차운영 적극 활용,<br>▸모임・회식 자제 |